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운용적 군비통제의 모색—

李 瑞 恒*

<목

차>

- | | |
|----------------------------|----------------------------------|
| 1. 머리말 | 반적 방안 |
| 2. 운용적 군비통제의 실체 | (2) 한반도관련 기존의 제
제안 |
| (1) 운용적 군비통제의 개
념과 상정목표 | (3) 운용적 군비통제의 현
실적 접근방법 |
| (2)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
—유럽의 경험 | 4.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
비통제 실현전망과 문제점 |
| 3.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
비통제 방안 | 5. 맷는말 |
| (1)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 | |

1. 머리말

최근 역사적인 南北韓高位級會談의 진전과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로 南北韓間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부문의 협력과 교류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도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南北韓은 1991년 12월 13일 제 5 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규율할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로 통칭)⁽¹⁾를 채택, 서명한 바 있어 군사부문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은 실질적 구현을 향한 轉機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냉전시대의 종막과 소련의 붕괴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이 轉換의 시기에 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 군사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배경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의교안보연구원 교수

(1) 합의서 전문은 「東亞日報」(1991. 12. 13), p. 3 참조.

첫째, 美・蘇 신데탕트를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전개된 국제화해와 평화지향적 추세는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적 평화무드 속에서 한반도만이 냉전의 孤島로 남겨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특히 1975년 헬싱키협약으로부터 시작된 유럽의 변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경험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한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던 독일 통일이나 유럽군축사례는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개선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에 더욱 가깝게 다가시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의 해결——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의 실현이 필수적인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韓國政府는 평화적 통일에 이르는 예비단계로서 이른바 「南北聯合」을 설정하고 있는 바, 안정된 南北聯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발발의 위험을 감소・제거하는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한 평화는 취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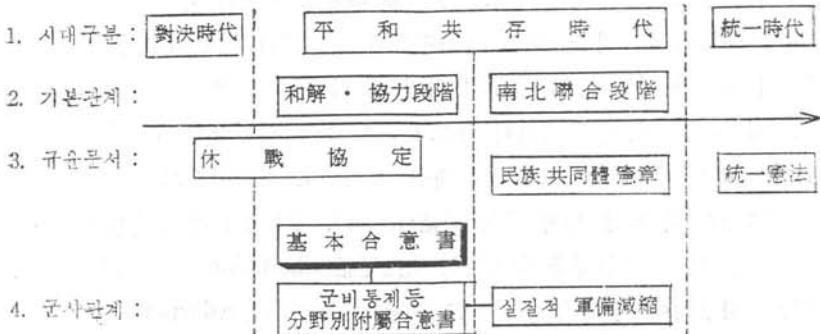
셋째, 국제평화무드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駐韓 美地上軍의 점진적 감축 결정도 남북한 군사문제 해결 필요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美國은 앞으로 10년이내에 3단계에 걸쳐 한반도 배치 地上軍의 완전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美國은 이같은 지상군의 감축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가 유럽형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 안정된 군축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장소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Defense, 1990:24-25).

넷째, 남북한 양측정부에 의한 군사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추구도 군비통제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히 부각되고 있는 배경중의 하나로 꼽힐 수 있다. 일례로 한국정부는 제 6 공화국 출범이래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속에서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개선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발상위에 「북한이 이제 敵이 아니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동반자」라는 한민족 공동체 개념에 의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도 자신의 비관적 경제상황때문에 군사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매우 비관적이며 더욱이 악화의 가능성성이 높다는 데에는 국내외 학

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여건에서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 지출은 당연히 경제적 곤란을 가속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방측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총 군사비지출은 전체 국민총생산(GNP)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사정에 반한 과도한 군사비지출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지양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Mack, 1990:6-7).

이상과 같은 배경하에서 남북간의 군사부문 협력과 교류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兩當局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불가침과 관련된 원칙적 군사문제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군축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章에서는 앞으로 남북한 군사부문 협력과 교류문제가 기본합의서에 토대를 두고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을 감안(표 1 참조),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군비통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 章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運用的 軍備統制(operational arms control)의 개념 및 사례와 남북한간 적용 가능한 방안, 그리고 문제점 및 실현전망을 살펴기로 한다.

〈표 1〉 南北韓關係의 예상진전도



2. 운용적 군비통제의 실체

(1) 운용적 군비통제의 개념과 상정목표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에 적용가능한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과 이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운용적 군비통제의 개념과 이 개

념이 상정하고 있는 구체적 목표——즉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치·군사적 환경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측면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군비통제 개념의 비교적 최근 형태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군비통제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서로 신뢰하여 안전과 안정 속에서 평화공존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의 해답이듯이 운용적 군비통제의 최종목표도 전쟁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에 두고 있다.

즉, 역사상 대부분의 전쟁발발은 잘못된 정보, 오해, 오산과 상호불신에서 비롯되어 왔다. 그러나 만일 각종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 부대배치 상황 등 주요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노출·공개하여 군사활동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높이고 군사적 의도(intentions)를 분명히 하면 전쟁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해·오판·불신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힐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를 사전에 감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능력(early-warning capability)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하는 방법이 곧 「운용적 군비통제」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CBMs)로 불리는 부대이동 및 배치·기동훈련과 관련된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군사력의 운용통제를 통해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되고 군사적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좀 더 어려운 일인 전쟁발발 능력의 감소 및 제거를 위한 군사력의 규모·구조 통제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사력의 규모와 구조를 통제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현수준에서 군사력 증강을 더 이상 하지 않는凍結(freeze), 일정수준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군비증강을 규제하는増强制限(limitation), 그리고 일정비율 또는 수량원칙에 따라 군사력 규모를 축소하는 감축(reduction) 등이 있으며 이를 방법을 서로 적절히 배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군사력의 규모와 구조를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대비하여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라고 부른다.

이상의 개념을 요약하면, 구조적 군비통제가 탱크나 병력 등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군사력을 통제하는 것이라면, 운용적 군비통제는 전투준비 상황, 기동훈련, 부대배치 등 전반적인 군사행동의 범위와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운용적 군비통제의 목적은 상호 군사활동의 공개성을 높여 기습공격을 억제하고 군사행동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시켜 주는 데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군사활동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을 증대 또는 유지시키는 일정한 틀(framework)을 확립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Goodby, 1990:113).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BMs 또는 CSBMs)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위기 감축조치(risk-reduction measures) 또는 안정화 조치(stabilizing measures) 등도 비슷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운용적 군비통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실제 군사관련 협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美—蘇 Hot Line 협정(1963년 이후 계속 개정됨)
- 美—蘇 핵사고 방지협정(1971)
- 美—蘇 해상사고 방지협약(1972)
- 헬싱키 최종합의서(1975)
- 스黠흘름 협약(1986)
- 美—蘇 위험군사행동방지협정(1989)
- 美—蘇 전략훈련 사전 통보협정(1989)
- 파리현장(1990)

(2)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유럽의 경험

운용적 군비통제개념에 대한 이해는 특정지역에서 전개된 실제 사례를 검토할 때 더욱 명확해 진다.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즉,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행과 관련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유럽의 경험을 꼽을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과정을 밟아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현해 왔다.

운용적 군비통제의 실제적 시행경험이 없는 남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경험의 검토는 많은 교훈을 시사할 것이다.

(가) 헬싱키 최종합의서(1975)

유럽에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마련,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

를 채택한 때부터 비롯된다.

본래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개최는 1966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수뇌회의에서 소련에 의해 공식 제기되어 「유럽의 평화 및 안보강화를 위한 선언」을 통해 서방측에 제안되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주도하는 소련은 이 선언을 통해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전 유럽 경제공동체의 창설과 함께 東歐에서의 현상유지(status quo) 인정을 위한 유럽안보회의의 개최를 제의했는데, 당시 소련의 진정한 의도는 2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확보한 기득권——즉,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해게모니 정당화와 궁극적으로 중립화를 염두에 둔 2개의 독일 현실을 서방으로 부터 인정받는 것이었다(Stanford Arms Control Group, 1984:295).

바르샤바조약 기구측의 회의개최 제의는 1967년 칼로비 바리(Karlovy Vary)에서 열린 유럽 공산당대회에서도 반복되었으며 이는 「유럽인을 위한 유럽」(Europe for Europeans) 형성을 표명한 對西方 소련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이 같은 유럽에서의 테ライト 제도화를 통해 서방기술의 도입, 국방예산의 감축,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 축소를 추구했던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당초 東歐에 대한 소련의 지방적인 지위를 공고히 할 全유럽 안보회의 개최제의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1972년 5월 닉슨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을 계기로 의회의 압력에 따라 미국이 제의한 중부유럽에서의 상호균형감수형상(MBFR: 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에 대한 소련의 참여와 나토 회원국인 미국·캐나다의 동등한 참가, 인권문제의 의제포함 등을 조건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Stanford Arms Control Group, 1984:295-296).

알바니아를 제외한 全유럽국가와 미국·캐나다 등 35개국(NATO 16개국,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국, 비동맹 및 중립국 12개국)이 참가한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73년 7월 3일 헬싱키에서 본 회담이 개막되어 같은해 9월 18일부터 1975년 7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속개되었으며 1975년 8월 1일 헬싱키에서 최종합의서(Final Act)를 채택했다.

초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결론문서에 해당하는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정치·안보·경제·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문제를 다루고 있으며バスケット(basket)으로 불리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첫번째

바스켓은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10대 원칙」과 신뢰구축·군축을 포함한 안보문제, 두번째 바스켓은 경제·통상·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세번째 바스켓은 인권보장문제,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 교육·문화의 교류 등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간의 관계에 관한 원칙은 ① 主權의 평등과 존중 ②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행사의 억제 ③ 국경불가침 ④ 領土高權의 존중 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 내정불간섭 ⑦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⑧ 인민의 평등과 자결권 ⑨ 국가간의 협력의무 ⑩ 國際法의 성실한 이행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첫번째 바스켓에 포함된 「신뢰구축조치와 안보·군축의 제측면에 관한 문서」는 국가간 긴장의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의 강화에 공헌하기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밝히는 한편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로서 대규모기동훈련의 사전통보시행과 훈련참관, 읍서비의 교환등을 제시하고 있다.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유럽 안보협력회의 참가국들은) 무력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편, 특히 참가국이 타 참가국의 군사활동의 성격에 관해서 명확하고도 시기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군사활동에 관해서도, 오해나 오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한다…”⁽²⁾

헬싱키 최종합의서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기능은 한마디로 “긴장과 불확실성의 감소”(reduction of tension and uncertainty)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문서에 언급된 신뢰구축조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1) 주요 군사기동훈련의 사전통보 : 통상적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모든 CSCE 참가국에게 대규모 군사기동훈련을 통보. 대상은 육·해·공군을 불문하고 2만 5천명 이상 참가 훈련은 모두 포함되며 훈련개시 21일전에 통보함. 통보내용은 훈련의 명칭, 목적, 참가군대의 종류와 병력, 훈련실시지역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

(2) 헬싱키최종합의서의 全文 및 조항별 해석은 Victor-Yves Ghebali,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in the CSCE Process: Paragraph-by-Paragraph Analysis of the Helsinki and Stockholm Regimes* (New York: United Nations, 1989), pp.5-17 참조.

(2) 기타 군사기동훈련의 사전통보 : 2만 5천명 이하 참가 소규모 기동훈련등 훈련지역 인접 타 국가에게 사전통보.

(3)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 신뢰를 위한 善意의 의사표시로서 자발적으로 사전통보 대상이 되는 대규모 기동훈련의 참관을 위한 옵서버를 초청·교환함.

(4) 대규모 군병력이동 사전통보 : 각국의 자유재량에 따라 상호신뢰구축에 공헌한다는 목적에서 대규모 군병력 이동도 사전통보.

(5) 군인사 상호교환 : 군 대표단을 포함한 군인사의 교환방문을 촉진함. 이들 조치중 2만 5천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기동훈련의 21일전 사전통보와 훈련참관 옵서버의 초청은 헬싱키회종합의서가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이며 특히 대규모 군사기동훈련 사전통보는 헬싱키 합의서중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조치이다.

대규모 기동훈련 사전통보조치이외에는 모두 자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헬싱키 회종합의서가 별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또는 협약이 아니라 CSCE 참가국간의 공동정책표명(a statement of common policy)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Stanford Arms Control Group, 1984:295). 그러나 1975년 8월 합의서 채택 이후부터 1986년 11월 새로운 협약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약 10여년간 헬싱키 신뢰구축조치들은 대규모 군사기동훈련 사전통보가 130회, 훈련참관단 초청이 70회 이상 실행됨으로써 (표 2 참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왔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표 2〉 헬싱키 신뢰구축조치 실행 실적(1975. 8~1986. 11)

진 영	구 分	군사기동훈련 사전통보(2만5천명 이상)	훈련참관 초 청
NATO		77회	50회
WTO		32	10
NNA(중립·비동맹)		21	12
계		130	77

자료 : Victor-Yves Ghebali,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in the CSCE Process* (New York: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1989), pp. 19~24.

(나) 스톡홀름 협약(1986)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포함된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럽에서의 군사적 안전과 그에 따른 신뢰구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곧 1986년 9월 체결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Document)이다.

헬싱키 최종합의서는 합의서에 포함된 취지의 실행을 검토하기 위한 후속 회의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으며 헬싱키 신뢰구축조치 그 자체는 첫째 대규모 기동훈련에 한정된 군사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훈련참관초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즉, 자발적 의사에 의한 훈련참관단초청만 가능), 셋째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과의 분명한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기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후속회의가 CDE(Conference on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and Disarmament in Europe)의 이름으로 개최되었으며(1차 베오그라드 : 1977. 10~78. 3, 2차 마드리드 : 1980. 11~83. 9, 3차 스톡홀름 : 1984. 11~86. 9), 최종 스톡홀름회의에서 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스톡홀름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10개원칙을 재강조하고 있으며 기습공격의 위협이나 오판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각종 군사활동을 노출시키고 확인·감시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군사훈련 사전통보(Notification) : 13,000명 이상의 병력과 300대 이상의 탱크(상륙작전이나 공수부대의 경우는 3,000명 이상)가 참여하는 지상훈련의 42일전 사전통보.

(2) 훈련 참관(Observations) : 17,000명 이상 규모의 지상훈련(상륙작전 및 공수부대의 경우에는 5,000명 이상)에 대한 타국의 참관초청.

(3) 검증(Verification) : 미통보 지상훈련 협의국가에 대한 현장검증을 포함한 지상 및 공중감시.

(4) 연중 군사훈련 일정표 교환(Annual Calendars) :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차기년도 군사훈련 실시계획의 상호교환.

(5) 규제조치(Constraints) : 75,000명 이상(2년 전) 및 40,000명 이상(1년 전)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이들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구속력을 갖고(즉, 시행이 의무적임), 군사적

〈표 3〉 스톡홀름 신뢰구축조치 실행실적(1988~1989)

구 분 진 영	군사훈련	훈련 참관초청	현장검증	연중 훈련 일정표	
	사전통보			'87	'88
NATO	30회	19회	9회	6개국	8개국
WTO	37	12	9	6	6
NNA(중립·비동맹)	7	2	—	3	2
계	74	33	18	15	16

자료 : Victor-Yves Ghebali,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ithin the CSCE Process* (New York: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1989), pp. 87~98.

으로 중요하며, 적절히 검증될 수 있는 동시에 전유럽지역에 통용된다”는 의미에서 1975년에 채택된 헬싱키 신뢰구축조치들 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협약에 포함된 조치들은 ‘제 2세대의 신뢰구축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단순한 CBM이 아닌 군사적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로 불리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에 의한 신뢰구축조치의 실행실적은 조치가 채택된 처음 2년간(1987~88) 군사훈련 사전통보 74회, 참관초청 33회, 현장검증 18회, 연중 군사훈련 일정표 교환 참가 16개국 (표 3 참조)에 이른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 유럽에서는 동·서 진영 간에 상대방을 더 잘꿰뚫어 볼 수 있는 군사적 투명도(transparency)가 향상되어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재래식 무기감축을 목표로 한 군축협상(CFE)에 유익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다) 파리헌장(1990)

스톡홀름협약 채택 이후 유럽안보협력회의 참가국들은 1989년 3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CDE회의의 후속협상으로서 전유럽의 군사적 대치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보완적인 신뢰안보구축조치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CSCE를 속에서 CDEⅡ로 불려진 이 회의는 유럽재래식무기 감축협상(CFE)과 병행하여 개최되었으며 1990년 11월 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파리헌장(Charter of Paris)을 채택, 유럽에서의 군사대결구조의 종식 선언과 함께 신뢰구축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안보협력회의 제도화를 합의했다.

사실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된 이후 그동안 서방측 국가들은 이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안보구축조치들이 훈련과 관련된 정보제공에만 치중하여 「평상시」의 군사정보획득기회가 결여되어 있다는 단점(the absence of "static" information)을 지적해 왔다. 즉, 군사활동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국방예산의 규모는 물론이고 地上軍과 공군부대의 위치와 數, 부대편성 등을 소상히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 스톡홀름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들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국가들도 지상군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적인 공군 및 해군활동이 스톡홀름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그 결점을 지적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헬싱키·스톡홀름조치에 이은 제3세대의 새로운 신뢰안보구축조치 마련을 위한 CDEⅡ 회의는 훈련등 군병력 이동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군사활동과 부대배치·편성에 관계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유럽전체의 안정을 높이는 방안——즉, ‘안정화 조치’(stabilizing measures)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파리현장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새로운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분쟁방지센터’(Conflict Prevention Center)의 설립이며 이 기구를 통해 평상시의 군병력·부대 및 무기배치 상황·국방예산 등의 정보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현장은 이외에도 특별한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교환과 유럽국가간의 군사통신망 개선, 군인사교류의 증대, 군사전략에 관한 합동세미나 개최 등을 언급하고 있다. 파리현장은 또 기존 스톡홀름협약의 신뢰구축조치를 강화하여 사전통보 대상의 확대, 영공개방등 새로운 겸증수단의 도입과 겸증횟수의 증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들 조치들이 제도화된 CSCE회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채택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Sloan, 1990:5).

헬싱키·스톡홀름협약에 이어 파리현장이 규정하고 있는 신뢰구축조치들은 군사력 자체——즉, 군사장비 및 병력——의 감축과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나 군사활동의 투명성제고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유럽에서 서로 원하지 않는 군사적 대립과 기습공격·전쟁위험의 감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방안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는 유럽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학자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한반도에서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미 수립한 일반적 방안과 특별히 한반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기존의諸제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반적 방안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가장 포괄적이고도 일반적인 방안으로는 캐나다 외무성의 지원하에 작성된 James Macintosh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Macintosh, 1985). Macintosh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을 크게 ① 정보교환 및 통신체계유지를 통한 신뢰구축조치 ② 억제 및 기습공격 방지를 위한 신뢰구축조치 ③ 의도표명을 통한 선언적 조치 등 3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정보 및 통신 신뢰구축조치(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BMs)는 다시 정보조치, 통신조치, 통보조치, 훈련참관조치로 세분될 수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부대의 편성·장비현황·국방예산 등 각종 정보교환, 군인사교류, 주요 군사령부간 적통전화(hot line)설치 또는 공동위기관리센터 설립 등 통신망 구축, 기동훈련 및 부대이동 사전통보를 포함한 군사활동의 공개, 훈련참관초청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둘째, 억제 및 기습공격 방지 신뢰구축조치(Constraint and Surprise Attack CBMs)는 사찰관 긴장완화, 특정 군사행동의 금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부대 및 장비이동 감시, 특정공세전력의 배치제한지대(Zone of Limited Deployment 또는 Exclusion Zone) 설치,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기동훈련 제한, 군사공개지역 설치, 군부대 통과지점 및 사령부에 대한 상대방 읍서버 상주 허용 등 무력충돌방지와 유사시 조기경보능력 확보조치를 포함한다.

끝으로, 선언적 조치(Declaratory Measures)는 군사사항과 관련된 특정 행

위를 ‘유예’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 또는 합의에 의한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조치의 대표적 사례로는 무력선제사용금지와 같은 不可侵宣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특정무기의 사용금지선언 등이 포함된다. 특정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약속 또는 협정은 신뢰구축의 적절한 방법이며,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적대하는 국가사이에 무력사용금지와 같은 선언의 결과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다면 그 선언은 신뢰구축조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한반도관련 기존의 諸제안

CSCE회의를 통한 유럽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성공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진행을 배경으로 최근 2~3년간 국제회의 또는 국내학술회의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Macintosh가 제시한 범주내에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며 한반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또는 평화적 이용 등이 삽입된 것이 특이한 것으로 꼽힐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 제시된 최초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은 1984년 4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중국방문시 죠지·슬츠 국무장관이 밝힌 것으로 이 방안은 다음 4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Findlay, 1988:31).

(1) 기존 배치병력의 후진과 중장비 무기 제거를 통한 비무장지대의 비군사적 성격 부활

(2) 비무장지대의 비군사적 성격을 검증하기 위한 중립국들로 구성되는 팀에 의한 정기적인 사찰

(3) 남북한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4) 상기훈련에 대한 참관인들의 상호교환

이후 나타난 제안들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들중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James E. Goodby 前 미국 스톡홀름 협상대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Goodby, 1989:356-58).

(1) 군사행동의 사전 통보

(2) 통보가능한 군사행동에 대한 참관자의 초청

(3) 차기년도 군사행동의 예고

(4) 요구에 따른 의무적 현장조사

(5) 연례적 예고에서 통보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행동 금지

(6) 군사통계 자료의 교환

(7) 군사훈련의 규모 및 유형에 대한 제한

(8)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9) 위협적 군사행동의 금지

(10) 부대주둔, 무기고, 통신연락망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11) 주요 군사지휘부에 대한 연락장교의 상호 배치

한반도와 관련한 기존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韓國政府가 제시한 제안은 빼놓을 수 없다.

이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³⁾

(1)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실시

(2) 군사정보의 상호공개와 교환

(3) 특정부대 규모 이상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통보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참관초청

(4)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과 확대방지를 위한 군사책임자간의 적통전화 설치·운영

(5)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3) 운용적 군비통제의 현실적 접근방법

군비통제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Macintosh의 신뢰구축 방안과 유럽의 경험에 기반하여 제시된 한반도 관련기존의 諸제안은 사실상 남북한간에 실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의 종류를 모두 망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기존 방안의 일부는 남북한의 독특한 군사적 대치현실과 주변상황의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개념과 아이디어(idea)만을 나열한 인상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이상에서 제시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운용적 군비통제의 궁극적 목적은 군사활동의 투명성 증진에 있으며 또한 투명성 증진 방안은 본질적으로 과거 비밀에 가려져 있던 특정의 군사활동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으므로 지역에 따라 그 시행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3) 「中央日報」(1990. 9. 5) 참조.

그러나 40여년 이상 상호 근접된 군사적 대결과 불신이 지속되어온 남북한 관계를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어느 한편에서 비대칭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실시는 가급적 피하고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방안('CBMs which are symmetrical in their effect')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Valencia, 1990:12). 이미 제시된 여러가지 방안중 '군 당국자간의 적통전화 설치 · 운영' 등이 이러한 조치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군비통제협상에 있어서 어느 한편이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운용적 군비통제에 관한 적절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1973년부터 거의 15년 이상 진행되었던 유럽에서의 상호균형감군협상(MBFR)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동서 양진영 모두가 상대방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믿는 분야에서의 우선적 감축을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모두 전진 배치되어 쌍방이 20km 이내의 근접된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위기감축조치(RRM: Risk Reduction Measures)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감축조치의 대표적 예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美—蘇간의 '위험군사행동방지협약'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Dangerous Military Activities)을 들 수 있는데, 이 협약은 군대가 상호 밀접히 대치하고 있는 地上에서의 행동규칙을 정해 쓸데 없는 오해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양국 군대 간의 사소한 우발적 사고가 보다 큰 무력충돌 또는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있다.⁽⁴⁾

위기감축조치는 본래 1972년 美—蘇가 海上事故방지협약(Incidents at Sea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해상사고방지협약은 해군함정의 이동이나 기동훈련시 일정한 행동규칙(rules of the road)을 상호합의 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하고,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이 협약의 전문은 Richard Fieldhouse (ed.), *Security at Sea: Naval Forces and Arms Contr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 278-85에서 발견됨.

로 하고 있다. 해상사고 방지협약은 과거 19년간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1986년에는 영국과 소련, 1988년 서독과 소련, 1989년 프랑스와 소련, 그리고 노르웨이와 캐나다가 똑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과 같이 해상 또는 지상에서 상호 군대가遭遇할 가능성이 많은 대치상황에서는 일정한 행동규칙의 제정이 다른 어떤 조치의 합의보다 효용성이 클 수 있다.

셋째, 남북한간의 운용적 군비통제와 관련된 조치는 사실 이제까지 한반도 내에서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연습, 이를 점진적으로 한반도내로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 의해 국제적으로 비군사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극대륙에 한국은 1988년부터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한도 기지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⁵⁾ 이곳에서 군비통제와 관련된 현장사찰(on-site inspection)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남극조약은 제 2 차 세계대전이후 체결된 최초의 성공적인 군비통제 관련 국제협약으로서 타국기지에 대한 군사무기 또는 핵관련 장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⁶⁾ 남북한은 모두 남극조약가입국으로 상대방기지에 대해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기지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의 남극기지에 대해 사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같은 기회의 활용은 운용적 군비통제조치의 검증과 관련된 현장사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우회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한반도와 같이 상호불신이 첨예한 지역에서의 군비통제는 각 단계의 방안이 다음 단계의 합의와 실행을 정당화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헬싱키최종합의서—스톡홀름협약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불신이 심한 협상당사국들간의 군사활동 투명성제고를 위한 신뢰구축의 경우 기능주의적이며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포괄적이며 일시적인 접근방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해 제시된 모든 방안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는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급

(5) 「東亞日報」(1991. 1. 14), p. 19.

(6) 남극조약 제 7 조 참조.

회담을 통해 남북한이 공통으로 주장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또는 평화지대화가 이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끌으로, 남북한이 구체적인 몇 가지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합의하기 이전이라도 이와 관련된 사안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증대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북한은 韓半島 非核化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핵 관련시설을 상호 사찰할 것을 합의하고 있는데 사찰허용 그 자체는 운용적 군비통제의 시발이며 군사문제와 관련한 善意의 意圖(good intentions)를 확 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운용적 군비통제협상과 별도로 진행된 상호 핵사찰문제를 원만히 실행에 옮길 경우, 그것은 다른 분야의 운용적 군비통제 촉진은 물론 전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

4.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전망과 문제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은 화해 ·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합의함으로써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발단계에 와 있다 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조치’의 시행에 합의했으며 앞으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등 ‘정보 및 통보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남북한은 이외에도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 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의 적통전화 설치 · 운영도 합의하고 있다.⁽⁷⁾

이상의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남북한 상호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물론 다음단계의 좀 더 어려운 일인 전쟁발발 능력의 감소 및 제거를 위한 군사력의 규모 · 구조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에 나열된 사항들은 그 시행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불가침 약속과 군당국자간의 적통전화설치 이외에는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7) 「기본합의서」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목하의 12~13조 참조.

통하여 협의·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어려움이 노정될 수도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내재된 장애요인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운용적 군비통제의 궁극적 목적은 군사활동의 투명성(transparency) 증대에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北韓은 과거 소련등 동구권 국가들이 취했던 것처럼 군사활동의 공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사실 운용적 군비통제라는 단어는 西力側 국가들이 강조했던 용어이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의 폐쇄속성상 군사활동 공개를 쉽게 결정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Armament and Disarmament: Commonly Used Terms and Acronyms*, 1989:20). 실제로 과거 북한이 제의했던 운용적 군비통제관련 제안은 투명성 증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북한은 군사활동의 투명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1990년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된 「남북한과 미국학자들의 제 1차 한반도 평화 및 안보에 관한 회의」에서 북한학자들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군축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입장이 ‘투명’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李瑞恒, 1990:16).

북한이 일반적으로 군비통제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핵전파 방지협약」으로, 「핵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핵 담보협정」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보다는 병력감축이 중심이 된 ‘군축’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왔다. 과거 발표된 북한의 군사문제 관련제안은 모두 ‘군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군비통제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다. 북한이 무력감축만을 강조한 ‘군축’이라는 용어에 집착할수록 군사운용적 측면에서의 신뢰구축조치는 경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북한의 군비통제정책은 내용면에서 병력중심의 감축, 형식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3者會談,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결과에 치중된 접근방법을 강조해 왔으므로(安秉俊, 1990:7). ‘과정’이 중요시되는 운용적

군비통제방안의 협상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다.

넷째, 현재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불신 자체와 각자가 갖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security mindsets)의 차이도 운용적 군비통제 협상진전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한반도 군사정세 및 전쟁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은 과거 냉전시대의 美—蘇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이른바 ‘mirror image’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정도로 여러면에서 상반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불신과 안보인식의 차이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문제 관관제의는 단순히 상대방이 제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한편에 의해 비판되거나 거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기본합의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상호불신과 안보인식의 차이가 지속되는 한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협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실현의 장애요인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불균형, 전력구조의 차이와 배치 및 이에 대한 서로의 상반된 평가를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한은 남북한의 군사력——특히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상비군사력을 고려한 戰力指數를 비교할 때 약 70대 100으로 열세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력구조 및 배치와 관련, 남한은 방어적 전력구조를 갖고 있음에 반해 북한은 공세적 전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남한과 비슷한 규모의 보병사단들 이외에 이른바 전격전(blitzkrieg)을 감행할 수 있는 ‘공세기동주축전력’ (offensive spearhead forces)으로서 약 40개의 기갑 및 기계화여단과 30여개의 포병여단(이중 절반이 상이 자주포여단), 그리고 20여개의 특수여단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기습공격이 용이하도록 휴전선 가까이 전진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국방백서, 1990:78). 이에 반해 북한은 남한이 군사력의 질적 측면에서, 특히 군사기술 및 장비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전력구조가 방어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군사력에 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한 상호공개된 군사정보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활동 투명성 증대를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이 한반도에서의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들 장애요인들이 모두 제거되고

사라질 때 남북한간의 운용적 군비통제 실현은 가능한 것이다.

5. 뜻 는 말

남북한간의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과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는 그 시발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인 남북한관계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 및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한 운용적 군비통제의 실체와 한반도에서의 장애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이글에서 논의된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은 이미 많은 전문가·학자들과 협상당사자인 정부당국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좀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제안들은 본격적인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제의 및 역제의에 따라 기존방안의 테두리내에서 개발·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내재된 상호 불신의 장애요인을 감안할 때, 문제는 '방안의 빙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의 빙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간에는 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시범적인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對 이스라엘관계의 사다트, 對 미국관계의 고르바초프와 같은 획기적 일탈자(defector)로 표현될 수 있는 최고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시범적인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찾는데 있어서는 현실적 접근방법으로 제시된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의 우선적 추구', 군사행동의 원칙제정과 같은 '위기감축조치'의 1차적 시행,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연습' 등이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건대, 남북한간의 운용적 군비통제 시행문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직접연계되어 있다. 1960년대 중반 국제과학아카데미 연맹에서 발간한 국제전문용어사전에 따르면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의 회피 또는 전쟁위험의 제거로 보는 것은 소극적인 평화접근방법이다. 단순한 전쟁의 회피는 평화라는 개념의 소극적인 결반이며, 이것만으로는 평화의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미흡하다. 평화라는 개념의 적극적인 결반은 적대 당사자간에 믿음을 창출하는 일이며 이런 의미에서 통일달성시까지 신뢰구축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방부

1990 「國防白書」, 서울 : 국방부

安秉俊

1990 “북한 군축제안의 내용과 문제점,”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발표논문.

李瑞恒

1990 「南北韓과 美國학자들의 제 1 차 한반도 평화 및 안보에 관한 회의 참가 보고서」, 서울 : 외교안보 연구원

Findlay, Trevor

1988 *Confidence-Building Measures for Asia/Pacific*, Peace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o.55,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Goodby, James

1989 “한반도 안보와 협력 : 분석의 틀,”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서울 : 국토통일원.

1990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1, Summer.

Macintosh, James

1985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 in Arms Control Process: A Canadian Perspective*, Ottawa: 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

Mack, Andrew

1990 “Is Pyongyang the Next Proliferator?” *Pacific Research*, Vol. 3, No. 1, February.

Sloan, Stanley R.

1990 “CSCE: A Start on a Structure,” *Arms Control Today*, Vol. 20, December.

Stanford Arms Control Group

1984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U.S. Department of Defense

1990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April.

Valencia, Mark

- 1990 "North east Asian Perspectives on the Security-Enhancing Value of CBMs," in *Disarmament: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 in Asia*,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 1989 *Armaments and Disarmament: Commonly Used Terms and Acronyms*, New York: United Nations.